

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618호 2017. 11. 15.(수)

선 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17-136호 웰컴투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 시행계획 고시 3

거창군 고시 제2017-137호 신원면 양지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기본,시행계획 승인 고시 4

거창군 고시 제2017-138호 신원면 대현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기본,시행계획 승인 고시 5

거창군 고시 제2017-139호 고제면 수내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기본,시행계획 승인 고시 6

거창군 고시 제2017-140호 웅양면 어인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기본,시행계획 승인 고시 7

거창군 고시 제2017-141호 대지조성사업계획 (변경)승인 고시 8

거창군 고시 제2017-142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9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17-1192호 열람공고문 (월천지구(소로3-164 3-165호선)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) 11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거창군 /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웰컴투 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제 38조,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‘15년착수 웰컴투 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 시행계획 수립(승인)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7년 11월 13일
거창군수

1. 사업명 : 웰컴투 월성골 거창군창의사업
2. 사업의 목적 : 거창군의 큰 자원인 덕유산을 대상으로 향후 “힐링지대 거창”이 지자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함.
3. 사업구역 :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, 산수리 일원
4. 사업규모 : 행정리 2개, 자연마을 10개
5. 면적 : 51ha(대지 및 농경지 3ha, 임야 48ha)
6. 가구 / 인구 : 213호/435명
7. 사업비 : 1,510백만원(국 1,057, 도 136, 군 317)
8. 사업의 효과 : 지역이 지닌 자산인 자연자원을 지역민이 활용하여 자연 치유의 메카로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, 임야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여줌
9. 사업기간 : 2015년 ~ 2018년(4년간)
10. 시행자 : 거창군수
11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: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.
12. 주요사업개요
 - 가. 기초생활기반확충 : 치유의 마당 조성
 - 나. 지역소득 증대 : 힐링센터
 - 나. 지역경관개선사업 : 달빛산책로 정비
 - 다. 지역역량강화사업 :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
13.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(☎940-8256)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17-137호

신원면 양지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본·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제 38조,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『신원면 양지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』 기본·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,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3일

거 창 군 수

1. 사 업 명: 신원면 양지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
2. 사업의 목적: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,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,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
3. 사 업 구 역: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양지리 양지마을
4. 마 을 규 모: 법정리 1개, 행정리 1개
5. 면 적: 105.0ha
6. 가구·인구: 38가구(농가 28, 비농가 10), 66명(남31, 여35)
7. 사 업 비: 540백만원(국비 339, 도비 43, 군비 103, 자부담 40)
8. 사업의 효과: 쾌적한 마을 정주환경 유지, 공동체 문화 회복 및 활동 활성화, 거창 남부권의 주요 연계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
9. 사 업 기 간: 2017년 ~ 2019년(3년간)
10. 시 행 자: 거 창 군 수
11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: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.
12. 주요사업개요
 - 가. 지역소득증대: 햇살좋은 체험장 조성
 - 나. 지역경관개선: 바람따라 들레길정비, 냇물따라 놀이터정비
 - 나. 지역역량강화: 체험마을디자인사업, 운영역량강화, 컨설팅, 홍보사업 등
13.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(☎940-8258)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신원면 대현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본·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제 38조,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『신원면 대현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』 기본·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,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3일

거 창 군 수

1. 사 업 명: 신원면 대현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
2. 사업의 목적: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,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,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
3. 사 업 구 역: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리 대현마을
4. 마 을 규 모: 행정리 1개
5. 면 적: 349.2ha(임야 300ha, 농경지 49ha, 기타0.2ha)
6. 가구·인구: 48가구(농가 48), 51명(남20, 여31)
7. 사 업 비: 500백만원(국비 339, 도비 43, 군비 103)
8. 사업의 효과: 쾌적한 마을 정주환경 유지, 공동체 문화 회복 및 활동 활성화, 거창 남부권의 주요 연계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
9. 사 업 기 간: 2017년 ~ 2019년(3년간)
10. 시 행 자: 거 창 군 수
11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: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.
12. 주요사업개요
 - 가. 지역경관개선: 서어나무숲정비, 기억의장소 조성, 용다리일대 정비사업
 - 나. 지역역량강화: 마을홍보, 숲관리매뉴얼 등
13.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(☎940-8258)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고제면 수내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본·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제 38조,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『고제면 수내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』 기본·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,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3일

거 창 군 수

1. 사 업 명: 고제면 수내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
2. 사업의 목적: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,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,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
3. 사 업 구 역: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수내마을
4. 마 을 규 모: 행정리 1개
5. 면 적: 148.0ha(대지 66.2ha, 임야 79ha, 기타 2.8ha)
6. 가구·인구: 103가구(농가 83, 비농가 20), 159명(남77, 여82)
7. 사 업 비: 500백만원(국비 339, 도비 43, 군비 103)
8. 사업의 효과: 쾌적한 마을 정주환경 유지, 공동체 문화 회복 및 활동 활성화, 거창 남부권의 주요 연계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
9. 사 업 기 간: 2017년 ~ 2019년(3년간)
10. 시 행 자: 거 창 군 수
11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: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.
12. 주요사업개요
 - 가. 지역경관개선: 물안애 포옹쉼터, 물안애사뽀산책길, 물안애풍당징검다리
 - 나. 지역역량강화: 생태길라잡이교육, 건강,환경,동아리프로그램교육, 컨설팅 등
13.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(☎940-8258)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17-140호

응양면 어인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기본·시행계획 승인 고시

『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』 제 38조, 『농어촌정비법』 제58조 및 제59조 규정에 의거 『응양면 어인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』 기본·시행계획에 대하여 승인하고, 승인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3일

거 창 군 수

1. 사 업 명: 응양면 어인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
2. 사업의 목적: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개선,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활성화,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한 주민 역량강화
3. 사 업 구 역: 경상남도 거창군 응양면 산포리 어인마을
4. 마 을 규 모: 행정리 1개
5. 면 적: 26.8ha(대지 9.0ha, 임야 10.0ha, 기타 7.8ha)
6. 가구·인구: 29가구(농가 28, 비농가 1), 62명(남33, 여29)
7. 사 업 비: 500백만원(국비 339, 도비 43, 군비 103)
8. 사업의 효과: 쾌적한 마을 정주환경 유지, 공동체 문화 회복 및 활동 활성화, 거창 남부권의 주요 연계 관광지로서의 자리매김
9. 사 업 기 간: 2017년 ~ 2019년(3년간)
10. 시 행 자: 거 창 군 수
11.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: 사업지역 주민의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참여의식과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주체의식.
12. 주요사업개요
 - 가. 기초기반확충: 충의어인길조성, 어인쉼터조성, 김면장군공원조성
 - 나. 지역역량강화: 문화복지프로그램, 리더교육, 스토리텔링, 마을자원활성화
13.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농촌개발담당(☎940-8258)으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고 시 문

거창군 고시 제 2017-141호

대지조성사업계획 (변경)승인

정윤재(에버그린전원마을 대표)가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「주택법」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1월 15일

거창군수

1. 사업명 : 에버그린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[수월리 산97-97]

2. 사업주체

가. 상호 : 에버그린전원마을

나. 대표자 : 정윤재

다. 영업소재지 :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45-37

3. 사업시행지의 위치·면적·규모

가. 위치 :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97-97외 3필지

나. 사업면적 : 22,260㎡

다. 규모 : 주택용지 12필지

구분	면적(㎡)	구성비(%)	비고
계	22,260	100	
주거용지	16,681	72.77	
단지내도로	3,692	17.70	
공공시설용지 (공용상수도, 녹지공간, 저류지)	1,887	9.53	

4. 사업시행기간(변경사항)

- 당초 : 2015년 6월 12일 ~ 2017년 10월 31일

- 변경 : 2015년 6월 12일 ~ 2018년 10월 31일

거창군수

※ 관계서류(도서는)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(☎940-3603)에 비치합니다.

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. 11. 15.

거창군수

- 도로명주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53 외 6건(부여 7건)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(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(☎055-940-3311~3)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-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-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,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-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○ 도로명주소부여

일련 번호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	도로명부여사유	비고
			도로명	도로명주소		
1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297-5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253	20090702	2017-11-15	행정구역명(거창+함양군) 활용	
2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전척리 171	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675-8	20091228	2017-11-15	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	
3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486-6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개화1길 70	20090401	2017-11-15	침의 꽃이 핀다고 하여 유래된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	
4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하고리 산189	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고창길 190-18	20090401	2017-11-15	하고리의 높은 재위에 있는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	
5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750-19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3길 23-20	20090401	2017-11-15	동변길 시점으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	
6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609	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철마길 305-99	20090401	2017-11-15	철마산이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	
7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1097	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2길 33 (푸르지오아파트)	20160420	2017-11-15	송정이란 마을이름 반영	

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

거창군 공고 제2017-1192호

거창군에서 시행하는 「거창 월천지구(3-164,3-165호선)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」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
2017. 11. 14.

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류 : 도시계획도로

- 명칭 : 월천지구(소로3-164,3-165호선)도시계획도로

개설공사

2. 사업자 : 거창군수

3. 위치 :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514-2번지 일원

4. 사업내용 : L = 393m, B = 6.0m

5. 공고기간 : 2017. 11. 14. ~ 2017. 11.

28.(14일이상/초일불산입)

6.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

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거창군 도시건축과 도

시개발담당 **【☎ 055-940-3595】** 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7.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: 붙임

[붙임]

□ 토지조서

일 련 번 호	수용할 토지의 표시						소유자		관계인		
	소재지 (거창군)	지번	지목		면적(㎡)		성명	주소 (현주소)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
			공부	실제	공부	편입					
1	거창읍 동변리	193-5	대	대	45	45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해당 없음	
2	거창읍 동변리	193-3	도	도	68	68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“	

□ 물건조서

일 련 번 호	수용물건의 표시					소유자		관계인		
	소재지 (산청군)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및규격	수량 (면적)	성명	주소 (현주소)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
1	거창읍 동변리	193-1	가옥	목조강판	77.58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해당 없음	
2	거창읍 동변리	193-1	창고	슬레이트	27.56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“	
3	거창읍 동변리	193-1	창고	슬레이트	11.88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“	
4	거창읍 동변리	193-1	화장실	블록슬라브	4.5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“	
5	거창읍 동변리	193-1	마당	콘크리트	45.5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“	
6	거창읍 동변리	193-1	담장	블록	1206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“	
7	거창읍 동변리	193-1	가옥	블록슬라브	24.0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“	
8	거창읍 동변리	193-1	하우스	-	24.0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“	

일련 번호	수용물건의 표시					소유자		관계인		
	소재지 (산청군)	지번	물건의 종류	구조및규격	수량 (면적)	성명	주소 (현주소)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
9	거창읍 동변리	193-1	계단	-	5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0	거창읍 동변리	193-1	수도전	-	1식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1	거창읍 동변리	193-1	감나무	33년	1주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2	거창읍 동변리	193-1	매실나무	23년	1주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3	거창읍 동변리	193-1	물앵두	13년	2주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4	거창읍 동변리	193-1	기타수목	13년	4주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5	거창읍 동변리	193-1	울타리	철파이프	15m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6	거창읍 동변리	193-1	하우스	-	24.0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7	거창읍 동변리	193-1	아궁이	-	3식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8	거창읍 동변리	193-1	지하수	-	1식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19	거창읍 동변리	193-1	우물	-	1식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20	거창읍 동변리	193-1	계단	-	2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21	거창읍 동변리	193-1	담장	-	14㎡	표영길	서울시 관악구 난곡로167, 105동1101호		"	

의견서

제 목		
소유자	성 명	
	주 소	
사 업 시행자	사업자명	거창군수
	사 업 명	월천지구(소로3-164,3-165호선)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
수용대상토지, 물건내역		
의 견		
<p>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7.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의견제출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전화번호 :</p> <p>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</p>		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▶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 	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제31조(열람)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(이하 "토지수용위원회"라 한다)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,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[전문개정 2011.8.4]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5조(재결신청서의 열람 등)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(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(행정시를 포함한다)·군 또는 구(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)의 게시관에 공고하고,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·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
⑤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,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.